日本의 公害問題

韓國公害對策硏究所
所長 張 性 喆

1. 公害發生의 背景

日本의 經濟는 二次大戰後 韓國動亂中의 所謂 特殊景氣에 힘입어 눈부신 發展을 이룩하여 그 國民總生産이 自由世界에서는 美國 다음가는 經濟力을 誇示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産業의 發展과 人口의 都市集中 經濟成長과 技術開發의 "갭"은 公害라는 現象을 낳게하고 오늘날 큰 社會問題로서 이 公害問題는 每日 매스콤을 通하여 크게 클로스·업 되고 있다.

二次大戰後의 日本經濟의 成長은 世界에서도 그 類例가 드문 程度의 빠른 速度로 進行되어 왔으며 近年의 平均成長率은 年間 10% 以上을 꾸준히 維持하여 왔다. 또한 重化學工業의 比率은 거의 歐美先進國의 水準에 到達함으로서 日本經濟는 構造的으로도 完全히 先進國의 班列에 들게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産業은 大旣 特定地域에 集中되어있고 特定地域의 工業出荷額의 全國的인 比重은 대단히 높다.

또 日本의 國土는 約 37萬 km^2 인데 그中 平地는 不過 30% 에 지나지 않으며 市街地面積은 1.2% 程度밖에 되지 않는다. 日本의 全國綜合開發計劃에 依하면 1975年度에는 人口 1億 2000萬人中 80% 가 市街地에 居住하게 될 것으로 推計되고 있다. 이처럼 日本은 極端的인 過密社會임을 알수있다. 이것은 集中에 依한 利益을 發生시키는 反面, 同時에 公害의 發生을 容易하게 하고 被害를 크게하는 原因이 되기도 한다.

技術開發의 急速한 發展은 生産의 量과 質의 向上에 크게 이바지 했으나 生産의 增大에 따른 豫測이 充分치 못하였기 때문에 排出物의 處理, 處分技術의 開發이 늦어져서 現在와 같은 不均衡的인 發展을 招來하게 되었다고 할수있다.

또한 公害가 發生하는 경우 그 因果關係 故意過失의 立證의 困難性 當事者가 多數인 것 等으 被害現象의 複雜性 때문에 司法的 救濟에 限界가 있었던 것도 公害問題를 複雜하게한 큰 要因이였다고 할수있다.

2. 日本에서의 公害問題의 變遷

日本에서의 公害問題는 國家의 經濟政策運營의 歷史的 變貌에 따라서 그다루는 方式이 極端的으로 變化하여 왔다. 이를 槪觀하면 다음과같다.

第一期 : 19世紀後半부터 第二次大戰이 終戰될 때까지는 政治的으로는 封建國家體制로부터 近代的 主權國家로의 脫皮가 經濟的으로는 資本主義體制에의 移行을 中心으로 急速히 達成된 時期이다. 이 時期에는 「富國强兵」이 最大의 國家的課題로서 하나의 國民的目標였다는 點에 그 特色을 찾을수 있으며 따라서 이 슬로간 아래서는 公害란 어느程度 참고견디어야 하는 必要한 「犧牲」이였고, 公害라는 말 自體가 普遍化以前의 槪念이였다.

第二期 : 廢虛國家의 時代이다. 即 第二次大戰이 終結된 後 戰禍로 破壞된 東京에 살던 市民들은 一年에 50日 以上이나 멀리 富士山의 깨끗한 姿容을 바라볼수 있었지마는 經濟生活의 窮乏은 그極에 達하고 있었다. 이처럼 나날이 生活이 어려운 窮乏한 生活속에서 산 사람들이 公害를 意識하고 未來의 公害對策을 생각할 만한 餘裕를 갖지 못한것은 너무나 當然한 것이였다.

第三期 : 韓國動亂中의 所謂特需景氣에 決定的으로 힘입어 經濟復興의 터전을 닦고 드디어는 高度成長國家로서 다시 擡頭한 時代이다. 1950年代 後半에 들면서 日本經濟는 그야말로 爆發的인 膨張을 이룩하게 되면서 비로서 오늘날 日本經濟의 癌的存在로 化하여가고 있는 公害의 諸

原因이 廣範圍하게 그리고 뿌리깊게 形成되어 간 것을 看過할수 없다.

日本列島, 特히 太平洋벨트地帶에 巨大한 콘비나트가 續續 出現하고 新規立地뿐만아니라 二次大戰前부터의 旣成工業地帶에도 巨大한 工場의 集積이 急速度로 進行되었다.

이러한 情勢下에서 公害의 溫床이 커갈수밖에 없는 基盤으로서 세가지 要因을 指摘할수 있는바 그 첫째는 蓄積資本의 貧困이고, 그 둘째는 飢餓經濟로부터의 脫出이라는 界常한 需要過多에 對한 供給力過少의 「언발란스」이며 그 셋째는 都市計劃의 落後性이라고 할수있다.

이 세가지 要因은 各各 「먹고살기 爲한 國民生產」을 強行시키는 結果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健康하고 文化的인 國民生活」의 觀點에 立脚한 經濟社會建設意識은 아직 充分히 定着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段階에서는 國民總生產의 成長率이 國民의 慾望充足의 바로메—타—로서 示顯되어 오늘날 떠들썩하게 들먹거리고 있는 이른바 「經濟大國」에의 大路를 疾走하는 結果가 되었다. 그러나 그 半面 例컨데 本州製紙(株)江戶川工場排水事件, 水俣病事件, 四日市喘息事件等과 같은 悲慘한 公害現象이 到處에 續出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公害現象은 初期에는 一般大衆의 눈에는 極히 限定된 局部的인 現象으로서 經濟發展에 따라 發生한 摩擦現象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全國民的 全產業的問題로서 一般的으로 클르즈·업 되기는 極히 最近의 일인 것이다.

第四期 : 1970年代에 드러서면서 高度成長經濟謳歌의 時代는 지나고, 사람들은 經濟發展의 質的側面에 對하여 至大한 關心을 表明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日本에서는 經濟大國으로서의 榮光의 그늘에 公害大國이라는 自嘲感조차 엿보일 程度로 公害에 對한 危機感이 高潮되기에 이르렀다. 日本이 갖인 風土的條件과 歷史的變遷의 特異性 때문에 日本은 이제 바야흐로 世界 어느 나라 國民도 겪은바 없는 深刻한 公害와의 對決의 時代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3. 日本에서의 產業公害對策의 槪要

日本에서의 公害對策은 世界各國에 比하여 制度的으로는 相當히 整備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的인 뒷바침이 比較的으로 잘되어 있는데 比하면 그 效果가 滿足스럽지 못하다는 批評이 日本國內에서도 籍籍하게 指摘되고 있다. 이것은 公害因子自體가 單純히 能動力이라서 뿐만아니라. 相當한 改善時間을 要하는 構造的要因 (例컨데, 企業모랄, 社會資本의 整備等)이 潛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以下 現在 實施되고 있는 公害對策을 產業公害問題를 中心으로하여 槪觀키로 한다.

1) 法律에 依한 公害規制와 紛爭處理 公害對策基本法을 頂點으로하여
   (1) 大氣汚染防止法
   (2) 水質規制二法(水質保全法과 工場排水等의 規制에 關한 法律)
   (3) 騷音規制法
   (4) 公害에 關係되는 健康被害의 救濟에 關한 法律
   (5) 公害紛爭處理法

等이 制定되어 있으나 이밖에도 鑛山保安法, 電氣事業法, 깨스事業法, 工業用水法, 砂利採取法 海水油濁防止法, 毒劇物取締法等의 特別法의 分野도 存在한다.

1) 大氣汚染防止法에서는 厚生大臣, 通產大臣 運輸大臣(自動車의 排出깨스 關係에 限함) 等이 主管大臣이나 中央官署의 役割은 指定地域의 指定(1970年 3月末 現在 35地域) 煤煙發生施設의 指定 排出基準의 設定外에 助成措置, 技術開發, 技術指導를 하는것 等이다. 따라서, 實際의 監視 監督의 權限은 各都道府縣知事 또한 政令指定市의 長에게 機關委任되어 있으며, 가) 工場煤煙의 規制關係事務(屆出의 受理, 改善命令, 緊急時의 措置等) 나) 大氣汚染의 監視測定 다) 自動車排氣깨스 濃度의 測定 라) 特定有害物質에 關한 事故時의 勸告等이 그 內容으로 되어있다.

2) 水質汚濁의 規制는 公害關係專門立法中 歷史가 가장 오랜것으로서 經濟企劃廳長官이 水質審議會의 意見을 들어서 指定水域의 指定(1970年 3月末 現在 70水域)과 水質規準의 設定을 行하나 實際의 團束은 各業種所管大臣이 直接 또는 그 地方支分部局의 長이나, 都道府縣知事에게 權限을 委任實施한다. 이경우의 事務內容은 屆出制의 實施, 改善命令等, 規制事務外에 助成措置, 技術指導, 技術開發等을 들수있다.

3) 騷音에 關해서는 從來, 地域的 特性이 强한 것으로서 地方公共體體의 條例에 依하여 規制되어 왔으나, 騷音規制法이 制定된後에도 大氣나 물의 경우와는 달리 中央管署는 騷音 發生이 念慮되는 特定施設을 指定하지마는 (1970年 3月末 現佐 金屬加工 機械等 11種) 規制基準에 關해서는 〔表 1〕과 같은 基準의 幅을 定하는 것 뿐으로서 그 幅의 範圍內에서 各都道府縣知事가 直接規制의 水準을 決定하도록 되어있다. 指定地域에 關해서도 各都道府縣知事가 스스로 決定하고 實際團束은 市町村長이 實施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4) 公害에 關係되는 健康被害의 救濟法은 世界的으로도 初有의 立法으로서 公害의 發生原因者의 民事賠償이라는 司法的 救濟措置가 現實的으로는 因果關係立證의 困難性 裁制期間의 長期化等 許多한 問題點으로 말미아마 健康被害라는 緊急을 要하는 것에 充分히 對處할수 없기 때문에 講究된 特別措置인 것이다. 이 救濟措置의 對象은 大氣汚染과 水質汚濁에 局限되어 있으며 現實的으로 疾病이 많이 發生하고 있는 地域을 國家가 指定하고 그 指定地域의 都道府縣의 知事 또는 政令市의 市長이 疾病에 걸렸다는 것을 認定한 者에 限定되고 있다. 救濟措置의 內容으로서는 醫療費中 自己負擔分外의 醫療手當과 看護手當을 支給하는 것으로서 約 切半의 費用을 業界全體가 負擔하고 나머지 切半을 中央政府, 都道府縣, 市等이 負擔하도록 되어있다.

5) 公害紛爭處理法은 1970年 10月 1日부터 發效된 最新立法으로서 公害關係의 紛爭에 關한 和解의 仲介, 調停 및 仲裁制度를 一元的으로 設定하는 것을 目的으로한 法이다. 이러한 制度中 和解의 仲介制度는 지금까지 大氣汚染防止法, 水質保全法, 騷音規制法體系中에 各各 포함되어 있든 것이다. 調停과 仲裁를 하게하는 和解의 仲介는 對象이 되지 않기때문에 總理府에 中央公害審査委員會를 두고 또한 都道府縣의 段階에서는 都道府縣公害審査委員會를 두어서 和解의 仲介調停 仲裁를 하게하고 있다.

6) 法律上의 問題로서 公害對策基本法 그 自體의 段階에서 實體的 內容을 갖는 것으로서 으뜸가는 것이 이른바 「環境基準」이다. 環境基準은 모든 種類의 公害에 關해서 모두 設定되는 것이 아니고 大氣汚染과 水質汚濁과 騷音等 세가지에 關해서만 政府의 閣議決定에 依해서 定하도록 되어있다. 이 基準의 性格은 어디까지나 行政上의 目標로서 個個의 事業者에 對하여 直接的인 規制效果를 갖는 排出基準이나 規制基準과는 그 性格을 달리하는 것이다.

現在, 環境基準으로서 設定되어 있는 것은 사람의 健康이라는 觀點에서 設定되어 있는 가) 硫黃酸化物의 環境基準(年間을 通해서 一時間値의 年平均이 0.05 ppm를 超過하지 않을것) 나) 一酸化炭素의 環境基準(連續 8時間中의 一時間値의 平均이 20 ppm 以下 連續 24時間中의 一時間値의 平均이 10 ppm 以下일것) 다) 물의 環境基準(시안, 水銀, 有機燐은 全혀 檢出되지 않을것 카도미움은 0.01 ppm, 鉛은 0.1 ppm, 크롬 및 砒素는 0.05 ppm 以下일것)等이 있다. 生活環境上의 물의 基準은 各河川, 湖沼, 海域을 群別로 分類하고 上水道, 水產, 工業用水, 農業用水等 各各 그 利水目的의 程度에 따라서 pH(水素이온濃度) BOD(生物化學的酸素要求量) 또는 COD(化學的酸素要求量)에 關해서 設定되어있다.

環境基準以外에 基本法上 實體的 內容을 갖는 것으로는 「公害防止計劃」과 「費用負擔」에 關한 規定이다.

公害防止計劃은 公害가 顯著하게 現存하거나, 顯著하게 發生할 憂慮가 있는 地域에 對하여 內閣總理大臣은 基本方針을 提示하고, 關係都道府縣知事에 對하여 그 地域의 綜合對策案으로서의 公害防止計劃을 策定하도록 指示하면 關係都道府縣知事는 이에따라 公害防止計劃을 策定하여 內閣總理大臣의 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다. 1969年 5月 27日 그 第1號로서 水島, 四日市, 千葉의 세地域에 對한 基本方針이 提示되었으며, 1970年 末까지는 東京, 神奈川, 大阪, 鹿島, 名古屋, 尼崎, 北九州, 大分 等地에 對하여 提示되었다.

費用負擔에 關한 規定은 公害政策上 今後의 重要한 課題이고 國際的으로도 論議의 焦點이될 問題이다. 基本法에는 「事業者는 그 事業活動에 依한 公害를 防止하기 爲해서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가 實施하는 事業에 關해서는 當該事業에 要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그 負擔의 對象이되는 費用

의 範圍費用을 負擔해야 할 事業者의 範圍, 各 事業者에게 負擔시킬 金額의 算出方法 其他負擔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別途로 法律에 依하여 定하기로 되어있다.

따라서 따로히 法律에 依하여 費用負擔에 關한 規定이 制定될 段階에 이르면 費用負擔에 關한 事業者의 責任論과 國家 公共團體의 社會環境整備責任論의 論議가 今後 白熱化 할것으로 豫想된다.

2) 產業公害防止施策에 關한 助成措置

民間企業이 法律上의 規制를 지키기 爲해서 또는 自發的으로 實施하는 各가지 公害防止施設의 設置에 對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助成하는 것은 當치도 않은 일로서 오히려 產業公害追放運動에 逆行하는 것이라는 有力한 反對論이 있음은 事實로서 確實히 一理가 있기는 하나 企業이나 產業이라는 것은 마치 有機的인 生物과 같은 것이어서 特히 日本의 經濟와 國民所得을 現實的으로 支掌하고 있는 產業을 前述한바와 같은 歷史的 背景과 公害가 發生하기 쉬운 要因을 內包하고 있는 現實로 말미암아 緊急을 要하는 當面한 公害防止를 爲한 民間의 努力에 對하여 公的援助를 供與하는 것은 實際問題로서 不可避한 實情이다. 特히 技術發展에 隨伴하여 公害防止關聯의 投資額은 從來의 豫想額을 훨신 上廻하여 顯著하게 巨額化 하고 있는 現實을 無視할수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以下 畧述하는 各種助成措置는 어디까지나 民間의 公害關聯投資를 誘導하거나 또는 그 投下資本의 回收를 促進시키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1) 公害防止 事業團에 依한 助成

公害防止 專門機關으로서, 가) 事業團自體가 用地의 取得 施設의 建設을 한後 讓渡하는 所謂「助成建設事業」과 나) 地方公共團體 또는 事業者에 對하여 公害防止施設設置資金의 融資를 하는 所謂「貸付事業」等을 目的으로 1965年에 設立되었다. 事業團設立 以來 1968年까지의 實績은 表 2와 같이 總額221億圓에 達하였다. 1969年, 1970年度의 事業規模는 해마다 飛躍的으로 擴大되어 表 3과 같이 1970年度에는 特히 貸付事業이 顯著한 伸長을 보였다.

(2) 日本 開發銀行에 依한 特別融資

1970年度 現在 가) 過密公害地域으로 부터의 大工場分散融資 나) 重油脫硫裝置融資 다) 地盤沈下防止, 廢水處理施設融資 라) 排煙脫硫裝置融資 마) 地域暖房設備融資 等이 認定되고 있다.

(3) 中小企業金融公庫에 依한 融資

特히 中小企業을 對象으로 汚水處理施設, 煤煙處理施設, 騷音防止施設等을 爲해서 融資한다 1970年부터는 事業場의 個別移轉融資制度도 實施되고 있다.

(4) 國民金融公庫 : 1970年부터 產業公害防止貸付制度를 實施하고 있다.

(5) 中小企業設備近代化 貸付制度 : 이 制度自體가 零細企業對策의 色彩가 濃厚하나, 이 制度에는 汚水處理 煤煙, 騷音, 防止, 海水油濁防止 砂利汚濁水處理施設 等이 그 對象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는 中小企業振興事業團에 依한 融資制度도 있다.

(6) 稅制上의 優待措置 : 가) 國稅關係—產業公害施設에 關해서는 耐用年數短縮과 初年度 1/3 特別償却制度가 認定되어 있다. 나) 地方稅關係—汚水處理, 煤煙處理施設에 關한 固定資產稅의 免稅, 砂利濁水處理施設 70 m 以上의 高煙突및 騷音防止 施設에 關한 固定資產稅 1/2 輕減이 實施되고 있다.

(7) 公害防止 關聯機器의 Lease 事業 : 1970年度부터 新設된 것으로서 資金運用部 資金에 依하여 興業銀行債, 長期信用銀行債, 不動產銀行債等을 引受한 資金을 Lease 資金으로서 活用하는 制度이며, Lease 會社를 媒體로하여 公害防止機器 實需要者인 事業者를 助成함과 同時에 公害防止機器產業의 育成에 이바지 한다.

(8) 商工會議所에 依한 產業公害相談室의 設置 : 앞으로의 產業公害對策은 各地域에서 具體的, 個別的으로 中小企業者의 實情을 參酌하여 適切한 誘導를 展開하는 것이 重要한 포인트가 될것이다. 따라서 1970年度부터 國家의 委託事業으로서 日本 商工會議所와 13의 地方商工會議所에 公害防止相談業務를 代行시켜서 公害防止施設의 設置, 生產工程의 變更, 原燃料의 轉換, 工場移轉等 問題에 關하여 케이스·바이·케이스로 積極的인 컨설탄트業務를 實施하고 있다.

4. 今後의 課題

經濟建設優位論的인 觀念이 支配的인 韓國의

現實性에서 본다면 前述의 日本에서의 各種公害防止對策은 日本으로서는 아직도 未洽하다. 우리로서는 부러울 程度이다. 勿論 日本에서는 公害를 經濟發展의 必要惡으로 斷定하는 論者가 있는 反面 産業이 亡하드라도 맑은 山川을 되찾아야 한다는 極端論者가 있으나 現實로서 重要한것은 公害問題에 關한 限 二者擇一의 單純한 思考가 容納될수 없는 點이다. 따라서 經濟發展이 眞正으로 人間의 知慧의 所産일진대 公害發生을 未然에 防止하면서 豊饒한 社會를 實現하는 것은 반드시 不可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意味에서

1) 特히 科學과 技術은 人類를 地球汚染에서 効果的으로 救出하기 爲해서 再開發 되어야 할 것이다. 生産을 높이기 爲한 System Engineerings의 重要性 以上으로 地球上의 公害를 封鎖하기 爲한 System Engineerings의 開發이 要請되는 것이다. 日本에서는 最近 公害防除對策의 方法論으로서 科學的 Approach; 技術開發에 依한 前進 事前豫防主義의 實現이 强調되고 있으며 特히 「公害 없는 콤비나—트」의 實現을 爲해서 1965年 以來 實施되어온 通産省의 産業公害綜合事前調査와 1969年度부터 豫算化 되어온 Simulation System은 世界에서도 그 類例를 볼수없는 科學的 政策手段이라고 할수있다.

또한 現在 日本 工業技術院 傘下의 15個 國立試驗研究機關中 11個機關이 公害防止 技術開發에 盡力하고 있고 이와 併行하여 大型 Projeg 委託研究制度에 依하여 實施되어온 가) 活性炭法에 依한 排煙脫硫技術, 나) 活性酸化 만간法에 依한 排煙脫硫技術 다) 重油直接脫硫技術은 國際的으로도 크게 注目받고 있는 劃期的인 研究이다. 또한 今後, 緊急히 그 開發을 서둘고 있는것은 産業·都市廢棄物의 處理技術, 特히 플라스틱 廢棄物의 處理技術開發이다. 將來의 課題로서는 生産技術과 公害發生因子로서의 廢棄物處理技術의 Total System化와 公害防止 單體裝置의 工場全體, 콘비나트 全體에 걸리는 集中的 Systemes化의 開發이 클로즈·업 될것으로 본다.

2) 工業의 立地適正化政策의 成否如何가 今後의 公害問題의 樣相을 決定하는 重要한 問題임을 認識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日本도 狹少한 國土空間의 利用에 있어서 지금까지 失敗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全國民的課題로서 各地域開發展開의 指針으로서의 高次元的인 政治·經濟·社會의 綜合的 決斷에 依한 適切한 處理를 해야하는 問題로서 다불것이 要望되고 있다. 特히 日本에서의 公害問題는 자칫하면 新規工業立地와의 關聯에 있어서 너무 感情的인 問題處理方式에 빠지는 傾向이 있음이 警戒되고 있다. 勿論, 過去, 立地企業의 環境汚染行爲가 住民의 알러—지—를 刺戟하고 있는 事實을 正視하고 産業側의 猛反省을 促求할 必要가 있으나 如何튼 早速한 問題解決을 爲해서는 科學的, 合理的 룰을 官民이 一體가되어 確立해야 할 것이다.

3) 今後의 公害問題 또는 環境問題는 앞으로, 價値觀의 變更에 關聯된 問題로 發展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것을 經濟的 次元에서 보더라도 日本商品은 國際競爭力面에서 早速한 再檢討가 强要되고 있다. 即 어떤 日製 商品의 cost가 1弗이 아니라 適正公害 防止費用을 加算한다면 輸出價格이 1弗 50仙가 되어야 했을런지 모를 경우가 있었을 것인즉, 이러한 모든 商品은 이제 再整備의 고비에 드러섰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問題는 生産業者에 關해서도 말할수 있다. 即, 假令 그 商品을 만들고 있는 Maker가 100社가 있는 경우 萬一 公害코스트에 依해서 市場 競爭이 調整되었드라면 20社 밖에 殘存하지 못했을런지 모를일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새로운 商品 코스트의 原理에 依해서 日本의 産業構造自體가 또는 어떤 業種의 體制 그 自體가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時期가 반드시 앞으로 닥쳐올 것으로 展望된다. 이러한 動搖는 國際的인 公害論議의 所産으로서 波及되는 경우도 豫想되지마는 國內的으로도 이미 活潑히 擧論되고 있는 公害費用負擔의 制度論을 通해서 意外로 빨리 政府와 産業界가 그 態度를 決定하지 아니할 수 없는 時期가 到來할런지도 모른다. 바로 이 問題에 如何히 對處할 것인가가 日本에 있어서 社會科學的 테마로서의 今後의 重要한 政策課題의 하나가 될것으로 보며, 急進的인 工業化段階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先進工業國의 苦悶을 反復하지 않기 爲하여는 日本의 經驗에서 배우는바가 있어야 할것이며, 이러한 政策的課題를 果敢히 풀어나가야 할것으로 믿는다.